

※ 세계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3

이 자료는 2021년 7월 26일(월) 15:30부터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#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---

2021. 7. 26.

기획재정부



# 목 차

## I. 선도형 경제 전환 / 경제회복 지원

### 1.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
(1)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	1
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취지	1
② 3대 분야 선정 이유	1
③ 분야별 국가전략기술(안) 선정 기준	2
④ 금번 세제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	3
(2) 신성장기술 R&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	3
① 신성장·원천기술 기술평가·심의 개선 취지	3
(3) 지식재산(IP) 시장 수요·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	4
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대효과	4

### 2. 일자리 회복 지원

(1) 창업-성장-회수-재투자 단계별 창업·벤처 지원	5
(1-1)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5
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요	5
②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취지	5
(1-2) 스팩(SPAC)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	6
① 스팩 소멸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필요성	6
②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완화 취지	6
(1-3)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	7
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	7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	7
③ 분할 취득 시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계산 방법	7
(2) 일자리 창출·유지 지원	8
(2-1)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	8
① 개정취지	8
② 적용사례	8

### 3.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

(1)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	9
①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추진배경	9
(2)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	10
① 개정내용 적용사례	10

(3)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	11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	11
②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?	11
③ 탄소중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·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?	12
(4) 한-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	13
① 개정 배경	13
② 개정 내용	13
(5)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	14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	14
② 금번 규제개선으로 유사 과실주 제조 등으로 여타 주류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?	14
(6)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	15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	15

## II. 포용성 및 상생·공정기반 강화

### 1. 상생협력기반 강화

(1)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	16
(1-1)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	16
① 상생결제 활성화 필요성	16
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유	16
③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	17
(1-2) 「착한 임대인」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17
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	18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	18
③ '20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?	18
(2)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	19
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개요	19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	19

### 2.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(1)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선	20
(1-1)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	20
①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	20
②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취지	21
(1-2)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	21
①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	21
② 개정 전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·정산시기 비교	22

<b>(2) 근로자·자영업자 지원</b> .....	23
<b>(2-1)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</b> .....	23
①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도 개요 .....	23
② 개정내용 및 효과 .....	23
<b>(2-2)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</b> .....	24
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.....	24
② 개정내용 및 효과 .....	24
<b>(2-3)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</b> .....	25
① 제도 도입 취지 .....	25
② 제도 개요 .....	25
<b>(2-4)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개편</b> .....	26
① 제도 개요 .....	26
② 개정 배경 .....	26
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.....	27
<b>(3) 중소기업·고령자·농어민 등 지원</b> .....	28
<b>(3-1)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</b> .....	28
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취지 .....	28
②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되는 과세연도의 기준일 및 환급 신청 시기 .....	28
<b>(3-2)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·강제징수 유예 확대</b> .....	29
① 제도 개요 .....	29
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 .....	29
<b>(3-3)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</b> .....	30
①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.....	30
<b>(3-4)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</b> .....	31
① 주택연금 개요 .....	31
② 개정내용 및 효과 .....	31
<b>(3-5)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</b> .....	32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.....	32
②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? .....	32
<b>(4) 청년 자산형성·주거에 대한 지원</b> .....	33
<b>(4-1)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</b> .....	33
① 제도 개요 .....	33
② 소득요건이 엄격한 것 아닌지 .....	33
<b>(4-2)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</b> .....	34
① 제도 도입 취지 .....	34
② 제도 개요 .....	34
<b>(4-3)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</b> .....	35
① 중소·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.....	35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.....	35

(4-4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	… 36
① 제도 개요	… 36
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	… 36
(5)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	… 37
(5-1) 상용근로소득·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	… 37
① 간이지급명세서란?	… 37
② 상용근로소득·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?	… 38
③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?	… 38
(5-2)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	… 39
① 전자(세금)계산서란?	… 39
②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방법	… 39

### 3. 과세형평 제고

(1)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	… 40
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취지	… 40
(2)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	… 41
① 「법인세법」 상 성실신고확인제 개요 및 대상	… 41
②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제재 및 인센티브	… 41
③ 성실신고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취지	… 41
(3)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	… 42
① 「소득세법」 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요	… 42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	… 42
(4)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	… 43
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취지	… 43
② 적용 대상 법인	… 43
(5)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	… 44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	… 44
②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	… 44
(6)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	… 45
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취지	… 45
② 개정내용 적용대상	… 45

## III. 안정적 세입기반 /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### 1. 과세기반 정비

(1)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	… 46
(1-1)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·제출의무	… 46
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	… 46
② 개정 내용 및 효과	… 47

<b>(1-2) 특정외국법인(CFC)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</b>	48
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란?	48
② 세부담률 평정기준을 법인세 최고세율의 70%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유는?	49
③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?	50
<b>(1-3)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</b>	51
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개요	51
②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이유는?	51
<b>(2)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</b>	52
<b>(2-1)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</b>	52
① 최근 국세청 등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, 추가로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?	52
<b>(2-2) 가공·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</b>	53
① 현행 명단공개 제도	53
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?	53
<b>(2-3)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·검사 대상 확대</b>	54
① 질문·검사권 제도 개요	54
② 질문·검사 대상자 확대 범위 및 그 이유	54
<b>(2-4)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</b>	55
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?	55

## 2.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

<b>(1)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</b>	56
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?	56
② 구체적인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수준은?	56
<b>(2) 자영업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</b>	57
<b>(2-1)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</b>	57
①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→ 1년으로 확대하는 이유	57
<b>(3) 납세 편의 제고 등</b>	58
<b>(3-1) 택주·택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</b>	58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	58
<b>(3-2)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</b>	59
① 개정 배경	59
②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	59
<b>(3-3)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혜용</b>	60
① 개정 배경	60
② '22.4월부터 시행(3개월 유예)하는 이유	60

(3-4) 원양어선용 선박 · 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	61
① 개정 이유	61
②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	61
(3-5)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	62
① 개정 이유	62
②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	62

### 3. 조세제도 합리화

(1)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	63
① 개정 배경	63
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	63
③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화	64
(2)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	65
① 관세율표 개요	65
②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	65
(3)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	66
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미확인시 최고세율 적용하려는 이유는?	66
② 공급자 입증 방법은?	66

### IV. 기타

(1)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	67
① 현행제도	67
② 개정 이유 및 내용 (이중과세 제거방법 개선)	67
(2)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	68
① 일몰연장 취지	68
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배분 확대 등 개편 필요	68
(3)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	69
① 쇼핑몰형 등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명확화	69
② (참고) 그간 구매대행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	69
(4)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	70
① 개정 배경	70
② 개정 내용	70

## | 선도형 경제 전환 / 경제회복 지원

### 1.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
#### (1)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(상세본 1P)

##### 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취지

-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·공급망 경쟁 심화
  - \* 국제사회는 팬데믹,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·공급 기지 보유가 갖는 경제·안보적 가치를 재인식
- 우리경제에는 대외 리스크 요인<sup>\*</sup>이자 기회 요소<sup>\*\*</sup>로 작용
  - \*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기술경쟁 가열로 경쟁우위를 빼길 위험
  - \*\* 주요 전략품목의 핵심기술·공급능력 선점시 공급망 주도권·대외영향력 확보 기회
- 세계 측면에서도 국가경제·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
- 주요 전략품목 분야의 대상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R&D(핵심기술 확보)·시설투자(공급시설 확충)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추진

##### ② 3대 분야 선정 이유

- 경제·사회적 안보가치, 기술집약도(기술력이 중요한 분야), 국제 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
- ①반도체, ②배터리(이차전지), ③백신 3대 분야로 선정

반도체	배터리(이차전지)	백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글로벌 기술패권·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저탄소·친환경 경제 전환기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 증가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☞ 국내 경제·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산업전반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 ("산업의 쌀")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☞ 전기차 등 미래주요 산업의 핵심구성품으로 경제·산업 주도권 확보 기회 ("제2의 반도체")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☞ 타국 의존시 국민생명·건강 위협 초래, 보건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 직결("백신 자주권")</li></ul>

---
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큰 기술집약 분야

전제조업	반도체	배터리 <sup>1)</sup>	백신 <sup>2)</sup>	'16~'19년 평균, 연구개발활동조사
4.3%	8.5%	6.2%	9.9%	1) 일차전지 및 축전지(이차전지) 제조업 2)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
- 글로벌 기술패권·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

→ 핵심기술 확보, 생산능력·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

---

③ 분야별 국가전략기술(안) 선정 기준

- 핵심기술 선점, 공급·양산 경쟁 우위를 목표로 지원실효성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
① 제도시행 기간인 '21.下~'24년까지 지원 실효성이 높은 기술 선정

- \* 향후 3년간 집중 개발·투자가 예상되는 기술을 선정하되, 양산경쟁 속도전이 진행되는 반도체의 경우 초기 양산시설도 시설투자 지원 대상에 포함

② 각 분야별로 부문간·대중소 기업 간 균형감 있게 지원

- \* 특정부문 또는 대기업 한정 지원이 되지 않도록 안배

- 이를 위해, 관련 분야의 업계·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

- \* 업계(대/중견/중소)-학계·연구기관·전문가 의견수렴(5~7월)  
관계부처 국가전략기술(안) 실무안 협의 조정 후 경제중대본(7.22) 최종 논의

① (반도체) 메모리 / 시스템 / 소재·부품장비 등 분업화 된 생태계 전반을 모두 포괄하여 반도체 종합강국 위상 강화 지원

② (배터리) 현 상용 배터리 고도화,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, 소재·부품 국산화에 초점

③ (백신) “백신 자주권” 확보를 위해 개발·시험·생산·원부자재 등 백신 생산 단계 전주기 지원

#### ④ 금번 세제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

- 지원대상 기술, 공제율 설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
  - 각 분야별 중소기업에서 R&D·시설투자 중인 핵심기술을 다수 포함
    - \* (반도체) 팹리스, 소재·부품 부문 주로 중소기업 분포  
(배터리) 소재·부품 부문에서 주로 중소기업 분포  
(백신) 후보물질 발굴 외 모든 시험평가·원부자재 공급 등 부문은 주로 중소기업
  - 기업규모별 공제율 차등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더 클 것으로 예상
    - 중소기업은 R&D 비용에 대해 최대 50%,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% 세액공제 가능

❶ R&D 비용(%)	대	중견	중소	❷ 시설투자(%)	당기분			증가분
					대	중견	중소	
일반	2	8	25	일반	1	3	10	
신성장·원천기술	20~30	30~40		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3
국가전략기술	30~40	40~50		국가전략기술	6	8	16	4

#### (2) 신성장기술 R&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(상세본 2P)

#### ① 신성장·원천기술 기술평가·심의 개선 취지

-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의 지원 실효성 강화 취지
  -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가 신설된 '10년 이후 신성장·원천기술은 양적으로 지속 확대
    - \* ('10년 도입) 91개 → ('19년) 173개 → ('20년) 223개 → ('21년) 235개
  -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최신·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우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술 정비기반 마련
    - \* ❶ 신성장·원천심의위원회가 기존기술을 평가하고 신규기술 도입여부를 심의  
❷ 개별 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(3년)으로 존속여부 평가

### (3) 지식재산(IP) 시장 수요·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

(상세본 4P)

####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대효과

##### ① 특허권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

- 지식재산(IP) 거래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과공급 시장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측 인센티브 필요
  - \* IP 거래시장 공급 8.6만건 > 수요 0.2만건(공급의 2.3%) ('20년 기준, 특허청)
- 중소·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<sup>\*</sup>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수요측면의 지식재산 거래 유인 확대
  - \*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설정·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(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제외)

##### ②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 간의 과세형평 제고

-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·건물 등 제외)과 일부 특정 유·무형자산<sup>\*</sup>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
  - \* 현행 공제대상 무형자산 :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S/W
- 중소·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됨으로써 유·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## 2. 일자리 회복 지원

### (1) 창업-성장-회수-재투자 단계별 창업·벤처 지원

#### (1-1)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6P)

##### 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요

- 연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 우대 적용 중
- (수도권과밀억제권역)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생계형 창업은 5년간 50% 세액감면
- 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) 생계형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감면율 50%p 우대하여 지원

<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·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>

	일반 창업	생계형 창업
수도권과밀억제권역	-	5년간 50% 감면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	5년간 50% 감면	5년간 100% 감면

##### ②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취지

-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 확대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 매출액 4,8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

## (1-2) 스팩(SPAC)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

(상세본 8P)

### ① 스팩 소멸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필요성

-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양도차익(합병대가 - 피합병법인 순자산의 장부가)에 대한 과세 문제 발생 →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
- 스팩 소멸합병의 경우에도 스팩(피합병법인)의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 조치 필요

### ②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완화 취지

- 스팩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의 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 시 실질적으로 2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 존재
  - ⇒ 합병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1년 이상 사업 계속 의무 면제
- 스팩 합병은 IPO·유상증자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이며, 스팩의 주주는 IPO·유상증자의 출자자와 유사
  - ⇒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지분의 50% 이상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의무 면제
- 스팩의 상장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해 스팩의 유일한 사업(상장·합병 추진업무)이 완료되므로 승계 및 지속 필요성 無
  - ⇒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지속 의무 면제

### (1-3)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9P)

#### 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

-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<sup>\*</sup>의 주식을 한 번에 50%(경영권 인수 시 30%) 초과하여 취득<sup>\*\*</sup>할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% 세액공제

\*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,  
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,  
③취득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·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% 이상인 중소기업 등

\*\*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

- (기술가치금액) 다음 ①, ②<sup>\*</sup> 중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

\* ① :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× 지분비율  
② : 매입가액 - [(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× 1.3) × 지분비율]

#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- (개정내용)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

-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

- (개정취지)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 → 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 유도

#### ③ 분할 취득 시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계산 방법

- 순자산 시가는 각 취득시기별 시가 및 취득한 지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 안분계산

\* (예) (3.1일) 지분 20% 취득(순자산 시가 100) + (6.1일) 지분 60% 취득(순자산 시가 200) 시  
→ 순자산 시가 175 = (100×20%+200×60%)/80%

## (2) 일자리 창출·유지 지원

### (2-1)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12P)

#### ① 개정취지

-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,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지원 확대
  - 계층별·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非수도권에서 청년·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
  - 다만, 코로나19 영향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'21~'22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

#### ② 적용사례

-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'21년과 '22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1명 신규 채용한 경우
  - '21년 및 '22년 고용증가분 각각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 가능하며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도 가능

#### < 연도별 세액공제 사례 >

구 분	'22년*	'23년*	'24년*	'25년*	합 계
'21년 고용증가분	1,300만원	1,300만원	1,300만원	-	3,900만원
'22년 고용증가분	-	1,300만원	1,300만원	1,300만원	3,900만원
합 계	1,300만원	2,600만원	2,600만원	1,300만원	7,800만원

\* 신고연도 기준

### 3.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

#### (1)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

(상세본 19P)

##### ①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추진배경

- (제도현황) 관광·수출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\*

\* (공제율)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

- 다만, 공제대상은 TV프로그램 및 영화에 한정

- (OTT콘텐츠 공제허용 취지) 영상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디어플랫폼인 OTT\*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할 필요

\* 온라인동영상서비스 (Over-the-Top Service)

- OTT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제작 영상물의 OTT 시장 진출을 지원

- (적용시기) OTT 관련 근거법령 정비가 완료\*된 후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상 세액공제 규정 신설 예정

\* 현재는 OTT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및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될 필요

- ※ '20.6.23. 관계부처 합동, 「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」에서 기발표

## (2)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

(상세본 21P)

### ① 개정내용 적용사례

- (자산매각 시) A법인은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 계획<sup>\*</sup>이 포함된 「기활법」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(장부가액 50, 시가 100)을 매각

\* 자산매각 이후 3개월 이내 매각대금으로 **금융채무 20** 상환 및 1년 이내 **투자 30** 계획

$$\Rightarrow \text{(현행)} \quad 50(\text{양도차익}) \times 20(\text{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}) \div 100(\text{매각대금}=\text{양도가액}) \\ = 10 \text{ 과세이연} (\text{4년 거치 3년 분할과세})$$

$$\Rightarrow \text{(개정안)} \quad 50(\text{양도차익}) \times 50(\text{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 계획금액}) \div 100(\text{매각대금}) \\ = 25^* \text{ 과세이연} (\text{4년 거치 3년 분할과세})$$

\* 채무상환에 따른 과세이연  $10 (= 50 \times 20 \text{ 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} \div 100 \text{ 양도가액})$

투자에 따른 과세이연  $15 (= 50 \times 30 \text{ 투자 계획금액} \div 100 \text{ 양도가액})$

- (사후관리) A법인이 자산매각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채무 10 상환 및 1년 이내에 투자 10 완료 시

$$\Rightarrow \text{과세이연된 금액 중 } 15 = 5^1 + 10^2 \text{ 및 이자상당가산액만큼} \\ \text{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}$$

1」 10채무상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금액  $\times (20 \text{ 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} - 10 \text{ 금융채무 상환액}) \div 20 \text{ 금융채무 상환 계획금액}$

2」 15투자로 인한 과세이연 금액  $\times (30 \text{ 투자 계획금액} - 10 \text{ 투자금액}) \div 30 \text{ 투자 계획금액}$

### (3)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22P)

#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(개정취지)**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
  - 아울러,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업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
- (개정내용)**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기한 1년 연장(한도 100만원)
  - \*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(조특법 §109)

구분	하이브리드자동차	전기자동차	수소전기자동차
감면한도	100만원	300만원	400만원
일몰기한	'21.12.31. → '22.12.31.		'22.12.31.

#### ②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?

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은 저공해·환경친화적 자동차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
  -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'22년 까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, '23년 이후 감면여부는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\*를 고려하여 '22년 세법개정시 재검토
- \*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(19.11월)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'23.1.1.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
- 또한, 전기·수소 자동차의 일몰기한('22.12.31.) 등과 연계하여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몰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

③ 탄소중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보다 전기·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- 전기차 및 수소차(무공해차)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차(저공해차)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세제지원\*이 이루어지고 있음

\*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: (전기차) 300만원 (수소차) 400만원

-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
-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, 추진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충격도 감안할 필요

#### (4) 한-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

(상세본 23P)

##### ① 개정 배경

- 일부 FTA국가(미국, 호주 등 13개국)에 대해 협정 범위 내에서 수리·개조목적으로 일시수출입하는 물품 관세를 면제 중
  - 싱가포르\*의 경우 일정기간('06~'13.2) FTA관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세를 면제한 바 있으나
  - \* 한-싱가포르 FTA는 일시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
  - 이후 관세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
-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서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\*로 일시수출입되는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요청
  - \* 싱가포르는 항공정비산업 강국으로 수리·개조를 위한 국내 항공기 부품 일시수출입국 중 3위(미국 38%, EU 27%, 싱 17%)

##### ② 개정 내용

- 항공기부품 등 일시수출입물품 관세면제 대상국에 싱가포르를 한시적으로 포함(~'22.12.31.)

## (5)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

(상세본 25P)

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□ (개정취지) 주류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

□ (개정내용) 아래 ① 또는 ② 중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

① 과실첨가량은 맥주재료의 합계중량\* 100분의 20 초과 금지  
(현행 과실첨가량 기준)

\* 합계중량 = 발아된 맥류 + 녹말이 포함된 재료

② 과실첨가량이 발아된 맥류 중량\*의 100분의 50 초과 금지  
(추가된 과실첨가량 기준)

\* 발아된 맥류를 소량 사용하고 과실을 다량 첨가하여 유사 발포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를 방지

### ② 금번 규제개선으로 유사 과실주 제조 등으로 여타 주류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?

□ 개선된 규제안에서 맥주와 과실주 간 차별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

○ 발아된 맥류는 소량 사용하면서 과실을 다량 첨가하여 유사 발포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실 첨가량이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%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

□ 금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맥주업계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

## (6)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

(상세본 26P)

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□ (개정취지) 빠르게 변화하는 주류제조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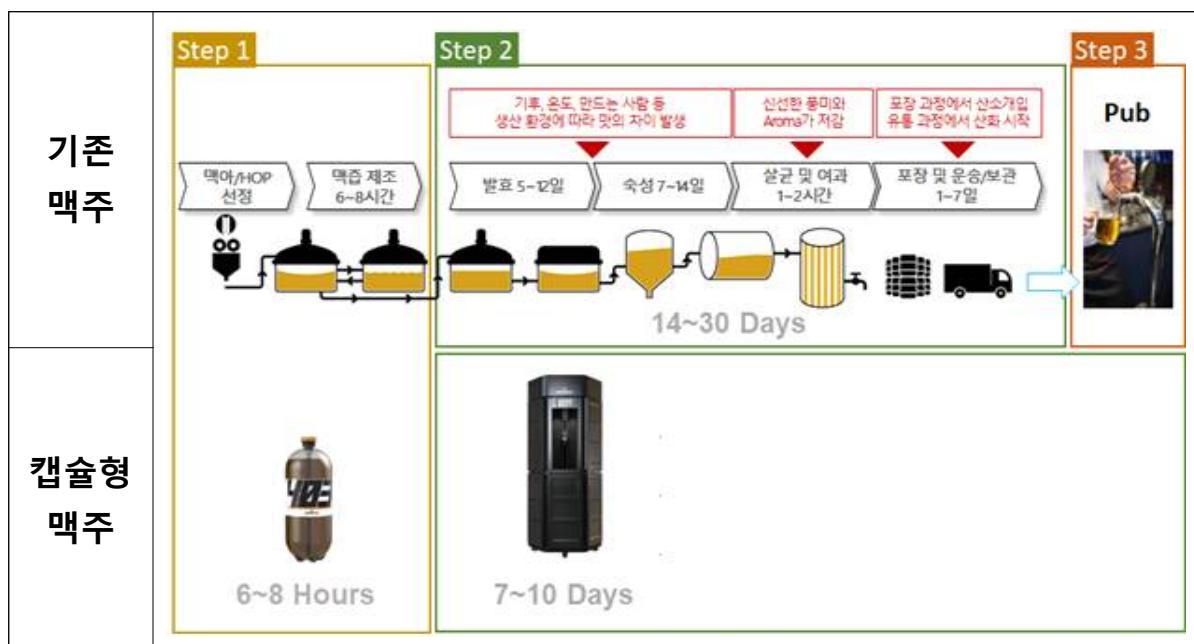
□ (개정내용) 캡슐형\*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

\*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·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담금·저장용기 불필요

□ (캡슐형 맥주)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·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판매장에 설치된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 제조

○ 전통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담금·저장용기 불필요

< 기존 맥주제조공정과의 차이 >



## 1. 상생협력기반 강화

### (1)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

#### (1-1)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

(상세본 27P)

##### ① 상생결제 활성화 필요성

- 결제기간 장기화,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결제\* 활성화 필요

\* 외상매출채권 기반 결제시스템으로, 2차 이하 협력사 봇을 은행에 별도 보관하여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,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

- 상생결제 제도는 ①결제기간이 짧으며 은행이 현금지급을 보증하고, ②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, ③상환 청구권\*이 없어 연쇄부도 위험이 없는 장점

\*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,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

##### 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유

- 제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,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구간 세분화

#### < 공제율 개편안 >

구 분	현 행	개정안	상향폭
15일 이내 지급	0.2%	0.5%	+0.3%p
16~30일 지급	0.1%	0.3%	+0.2%p
31~60일 지급		0.15%	+0.05%p

### ③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

-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

### (1-2) 「착한 임대인」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28P)

####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
  - (적용기간) '20.1월 ~ '21.12월
  - (공제금액) 임대료 인하액의 70%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%)
  - (임대인) 「상가임대차법」상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
  - (임차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§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① 동일 상가건물을 '20.1.31.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
- ② 사행성 · 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
-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(국세기본법 §2 20호)이 아닌 자
-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

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### □ (개정내용)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- 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「착한 임대인」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

※ (현행) 소상공인 /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/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한 경우  
(개정안)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'21.1.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

- ② '20.2.1.~'21.6.30.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

- ③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 (~'22.6.30.)

### □ (개정취지)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됨을 고려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

- ③ '20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?

### □ '20년에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'21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

- 개정내용이 '21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따라, '20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
- '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

## (2)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

(상세본 30P)

### 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개요

□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(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)

○ (공제율) 1,000만원 이하 15%, 1,000만원 초과분 30%

○ (공제한도) 기부금 성격에 따라 상이

① 국가·지자체, 국방현금 등 : 소득금액 × 100%

② 그 외 기부금\* : (소득금액 - ①) × 30%(종교단체 10%)

\* 사회복지단체, 의료법인, 학술·장학·문화예술·환경 단체, 종교단체 등

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□ (개정내용) '21.1.1. ~ '21.12.31.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제율 5%p 상향

현 행	개 정 안
기부금 ×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	기부금 × 20%(1천만원 초과분 35%)

□ (개정취지)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유도

## 2.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### (1)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선

#### (1-1)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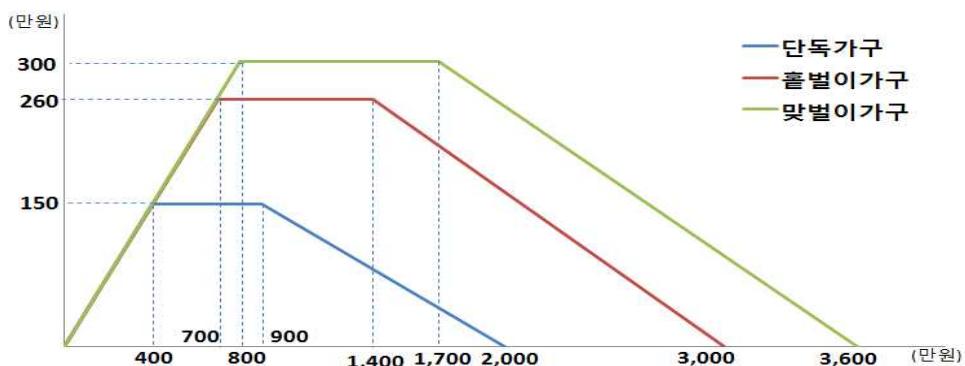
(상세본 31P)

##### ①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

- (목적)**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('06년 도입, '09년부터 지급)
- (신청자격)**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구 분	신청 요건
① 가구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(단독가구) 배우자·부양자녀(18세 미만)·직계존속(70세 이상)이 없는 가구</li><li>■ (홀벌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일정 요건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</li><li>■ (맞벌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</li></ul>
② 소득요건	단독 2,000만 원, 홀벌이 3,000만 원, 맞벌이 3,600만 원 미만
③ 재산요건	토지·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

- (지급수준)** 가구유형별 산정모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



\* 최대 지급구간(만 원): (단독) 400~900, (홀벌이) 700~1,400, (맞벌이) 800~1,700

- (지급주기)**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
  - \*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(연중 2회 지급) 가능

## ②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취지

-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\* 및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 원 인상

\*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,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됨

-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, 홀별이·맞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%까지 지원

※ '21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:

(1인가구) 연 2,193만원 (3인가구) 연 4,780만원 (4인가구) 연 5,851만원

-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'22년 지급시 단독가구인 최저 임금 근로자('21년 연 2,186만원(월 209시간 기준))도 지원 가능

※ 최저임금 추이(원) : ('18) 7,530 → ('19) 8,350 → ('20) 8,590 → ('21) 8,720

## (1-2)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

(상세본 32P)

### ①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

- (**목적**)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여 소득지원 체감도 제고

※ 기존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
- (**신청자격**)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 기간 기준\*으로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\* 단, 정산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기준으로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함

- **(지급수준)** 반기 소득분으로 추정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%를 지급
- **(지급주기)** 연중 2회 지급(12·6월) 후 1회 정산(9월)
  - (상반기분) 당해연도 9월 신청 → 당해연도 12월 지급
  - (하반기분) 다음연도 3월 신청 → 다음연도 6월 지급
  - (정산) 다음연도 9월
    - 상·하반기 既지급액 < 연간 산정금액 → 차액만큼 추가지급
    - 상·하반기 既지급액 > 연간 산정금액 → 차액을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·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## ② 개정 전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·정산시기 비교

- **(현행)** 당해연도 12월 상반기 소득분 지급  
→ 다음연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 → 다음연도 9월 정산
- **(개정)** 당해연도 12월 상반기 소득분 지급  
→ 다음연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과 함께 정산

상반기분		하반기분		정산
	'21.9월	'21.12월	'22.3월	'22.6월
현행	신청	지급	신청	지급 또는 차감
개정	<상 동>		지급 및 정산	<삭 제>

※ 반기 근로장려금 미신청시,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
('21년 소득에 대해 '22년 5월 신청 및 9월 일시 지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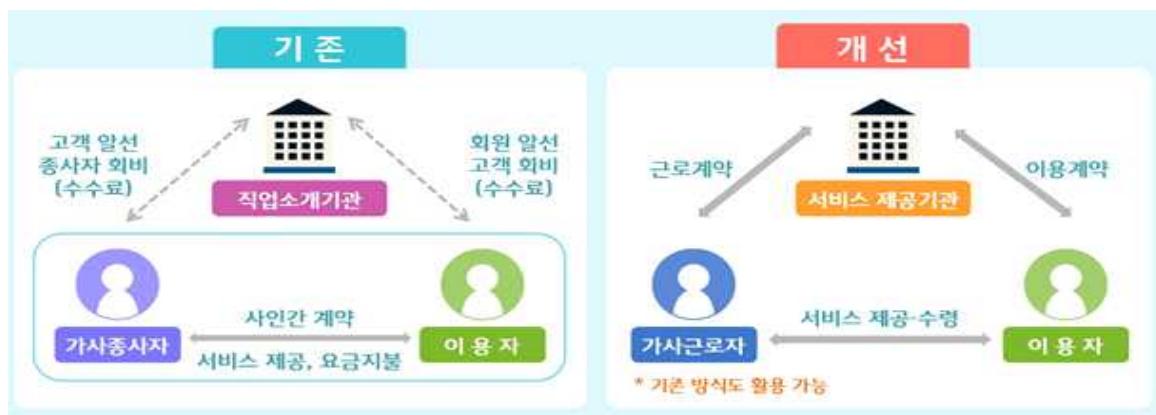
## (2) 근로자·자영업자 지원

### (2-1)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

(상세본 36P)

#### ①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도 개요

- 기존에는 가사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(소개업체 알선)
  - 「가사근로자법」 시행('22.6.16.) 이후에는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\* 제공 가능(부가가치세 과세 대상)
- \* 가정 내 청소, 세탁,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·양육 등



- (제공기관)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, 서비스 관리,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
- (이용자)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,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

#### ② 개정내용 및 효과

- (개정내용)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\*
- \* 저출산·고령화 대응 및 가사서비스가 개인적용역의 성격이 강한 점 등 감안
- (기대효과) 가사·육아 등 가계비용 부담 완화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

## (2-2)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

(상세본 39P)

###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

-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,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(50%)을 세무서장이 부과·징수하는 제도

<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>

사업자 유형	과세기간	확정신고	예정신고/고지
간이과세자	1년	1월	7월(예정고지)
일반과세 개인사업자, 법인(연매출 3억원 이하)	6개월(연2회)	1월, 7월	4월·10월(예정고지)
법인(연매출 3억원 초과)			4월·10월(예정신고)

- 다만,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 선택 가능
- 또한,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(1·7월)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

### ② 개정내용 및 효과

-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(30만원 → 50만원)

- 재난 등의 사유\* 발생시 예정고지 제외근거 마련

\* 「국세징수법」(§13①)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,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

-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
-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, 부도 또는 도산 우려
- ③ 납세자, 동거가족의 질병·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, 또는 사망 등

⇒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효과

## (2-3)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

(상세본 40P)

### ① 제도 도입 취지

-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·보유할 수 있는 '개인투자용 국채' 도입을 추진 중(「국채법」 개정안 '21.5월 국회 제출)
  -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국민의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
    - \* 단, 「국채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함
  - 개인투자용 국채는 보유기간(10~20년)의 이자를 만기 시 일시에 지급하여 결집효과가 있는 점도 감안
- ※ 동 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에서 국채 조달금리 하락 효과 등으로 타당성 인정

### ② 제도 개요

-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% 분리과세
  - (분리과세 한도)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, 총 2억원까지
  - (가입대상)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
  - (적용기한) '24.12.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

## (2-4)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개편

(상세본 41P)

### ① 제도 개요

- (개요)**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
- (가입대상)**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
(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
- (세제지원)**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\*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합계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· 초과분 9% 분리과세
  - \* 상장주식 양도차손도 순실로 인정(대주주 보유분 제외)
  - 농어민 · 서민형\*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· 초과분 9% 분리과세
    - \*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근로자,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 사업자
- (납입한도)** 연 2천만원 및 총 1억원(연 2천만원 한도는 이월가능)
- (의무가입기간)** 3년 (가입기간 연장, 해지 후 재가입 등 가능)
- (편입상품)** 예 · 적금, 펀드(ETF 포함), 파생결합증권, 상장주식
- (가입현황)** '21.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, 운용잔액 8.1조원

### ② 개정 배경

- 금융투자소득 도입('23.1.1~)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전환 등 과세체계 변경으로, ISA에 대한 과세체계 재설계 필요
- <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과세체계 개편 >

과세 상품	예·적금	펀드	파생결합증권	주식	
현행	이자	배당	배당	양도소득(대주주만 과세)	배당
'23년 이후	이자	배당	금융투자소득		배당

- 현재 ISA는 이자·배당소득만 비과세·분리과세 → 금투소득 도입 시 계좌 내 금투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체계 미정

### ③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- '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<sup>\*</sup>되는 점 등을 감안,  
\*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
  - ISA 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
  - 또한,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·배당소득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<sup>\*</sup>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
- \* 파생결합증권,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
-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자·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만원 (농어민 등 400만원)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%<sup>\*</sup> 분리과세  
\*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20%(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%)
  -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

#### < ISA 및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비교 >

가입요건	ISA	일반 금융투자소득
상장주식 · 공모주식형 펀드	▶ 비과세 ▶ 손실 발생 시 이자·배당소득과 합산	▶ 5천만원 공제, 초과분은 20% 과세
기타 금투소득	▶ 이자·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원 초과분 9% 과세	▶ 250만원 공제, 초과분은 20% 과세

### (3) 중소기업·고령자·농어민 등 지원

#### (3-1)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

(상세본 42P)

#####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취지

-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 허용중
  - 직전연도인 '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납부세액이 없는 결손기업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
- '20년 결손 중소기업은 '21년 결손금에 대해 현행 제도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 보완

##### ②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되는 과세연도의 기준일 및 환급 신청 시기

- '21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·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
- '21.12.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세액 환급 신청 가능

※ 개인사업자: 5월 소득세 신고시, 법인사업자(12월말 결산 법인): 3월 법인세 신고시

## (3-2)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·강제징수 유예 확대

(상세본 43P)

### ① 제도 개요

- 재기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체납국세의 납부고지 유예,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및 압류·매각 유예

- **(대상자)*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<sup>\*</sup> 받은 자 등

\* (융자 요건) 폐업 후 재창업 7년 이내의 자로서, 분식회계·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을 것

- **(요건)** ①최근 3년간 수입금액(현재 10억원 미만) 요건 충족 ②최근 5년간 체납 5회 미만 및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, ③체납액 5천만원 미만, ④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

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

- **(개정내용)** 수입금액 요건 완화(직전 3년 평균 10억원→15억원 미만) 및 일몰 연장 ('21.12.31→'23.12.31)
- **(개정취지)**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이 재기하여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요건 확대 및 기한 연장

### (3-3)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

(상세본 44P)

#### ①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

- **(제도 개요)** 재기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곤란<sup>\*</sup>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(최대 5년) 허용

\* (징수곤란)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

- **(요건)** ①폐업 전 3년간 수입금액 15억원 이하, ②재기 요건<sup>\*</sup> 충족, ③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, ④체납액 5천만원 미만

\* (재기 요건) 폐업 후 '24.12.31.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중이거나 (1개월 이상),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

- **(개정 내용)** '21.7.25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을 대상으로 특례 적용 확대

※ 기준일 당시('21.7.25)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가산금 면제 및 분납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 다시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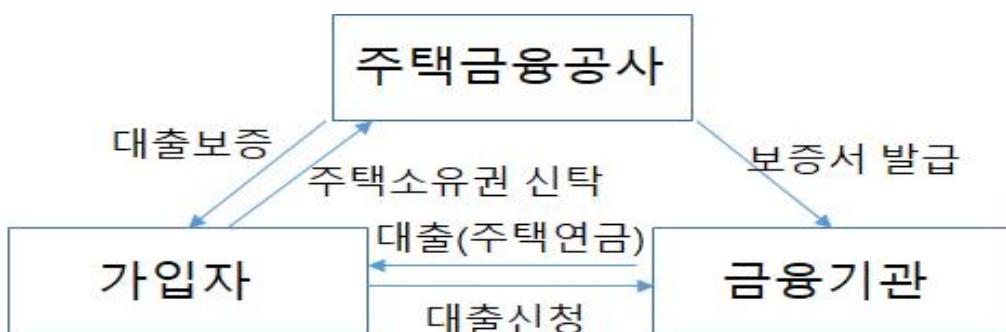
<세법 개정에 따른 특례대상 확대 내용>

	현 행	개정(안)
징수곤란 체납액 기준	- '19.12.31. 이전 폐업사: '19.7.25. - '20.1.1.~12.31. 중 폐업사: '20.7.25.	- '19.12.31. 이전 폐업사: '19.7.25. - '20.1.1.~12.31. 중 폐업사: '20.7.25. - <b>'21.1.1.~12.31. 중 폐업사: '21.7.25.</b>
재기기간	'20.1.1.~'23.12.31.	'20.1.1.~'24.12.31.
신청기간	'20.1.1.~'24.12.31.	'20.1.1.~'25.12.31.

### (3-4)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(상세본 45P)

#### ① 주택연금 개요

- 주택연금 가입자(고령층)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(주택연금)을 대출받고,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제도
  - 기존 근저당방식 외에 '21.6월부터 담보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
  - ① (근저당방식) 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, 공사가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
  - ② (담보신탁방식)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(신탁)하여 보증하는 방식\*
- \*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및 담보주택의 전세임대 등 효율적 관리 가능



#### ② 개정내용 및 효과

- (개정내용)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담보신탁 받은 주택\*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
  - \*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( $85m^2$ ) 초과주택, 오피스텔 등에 적용
  - ※ 기존 근저당방식의 경우 개인(상속인)이 처분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
- (기대효과) 담보신탁방식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

### (3-5)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46P)

#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(개정취지)**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지속 지원
- (개정내용)**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(휘발유·경유 250원/ℓ, LPG부탄 전액(161원/ℓ)) 적용기한을 2년 연장('21.12.31. → '23.12.31.)

#### ②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?

- 친환경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, 현재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\*이 대부분
  - 당분간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추진

\* 탄소배출량: (경차) 106g/km, (중형차) 170g/km

## (4) 청년 자산형성·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

### (4-1)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

(상세본 48P)

#### ① 제도 개요

- 청년층의 중·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 신설
  - (가입요건) ①만 19~34세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  
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,500만원 이하  
③계약기간 최소 3년~최대 5년
    - \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  - (펀드 운용요건) 국내 상장주식에 40% 이상 투자
  - (소득공제 배제) 가입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 제외
  - (추징)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·인출·양도 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(납입금액의 6%)을 추징
    - \* 납세자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
  - (적용기한) '23.12.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

#### ② 소득요건이 엄격한 것 아닌지

- 총급여 5천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<sup>\*</sup>의 약 1.4배에 해당하며, '20년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%가 포함
  - \* 29세 이하 가구 3년간 연평균 3,595만원(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)
- 과거 운영되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와는 달리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자도 포함

## (4-2)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

(상세본 49P)

### ① 제도 도입 취지

- 평균 소득 이하 청년\*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, 저축장려금(2~4%p 수준의 가산이자) 지급과 더불어 이자 소득 비과세를 통해 청년층 저축 촉진 및 목돈 마련 지원

\*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아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

### ② 제도 개요

- 청년이 청년희망적금(연 납입한도 600만원)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

- (가입요건) ①만 19~34세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  
②총급여 3,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  
③계약기간 2년

\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- (적용기한) '22.12.31일까지 가입, '24.12.31일까지 지급받는 분

### (4-3)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50P)

#### ① 중소·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(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)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
  - (대상자)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\*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
    - \*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의2조에 근거
  - (납입기간 요건) 5년 이상
  - (감면대상 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
  - (감면율) 중소기업 근로자 50%, 중견기업 근로자 30%
  - (적용기한) '21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

#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- (개정내용) 청년(가입시점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) 가입자의 감면율 50%(중견 30%) → 90%(중견 50%)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(~'24.12.31.)
- (개정취지)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미래대비를 위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
  - 청년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장기재직 유도에도 기여

## (4-4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51P)

### ① 제도 개요

-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
이자소득세 비과세(납입액 40% 소득공제\*와 중복 적용)

\*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적용

- (가입대상)  
① 만 19세~34세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별도 인정)  
②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
③ 무주택 세대주  
④ 계약기간 2년 이상
- (비과세한도) 연 납입액 600만원 이하, 총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

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내용) 가입대상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

가입요건	현 행	개 정 안
총급여액	3,000만 원	3,600만 원
종합소득금액	2,000만 원	2,400만 원

- (개정취지) 청년층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지원 강화

## (5)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

### (5-1) 상용근로소득·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

(상세본 53P)

#### ① 간이지급명세서란?

-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개인별 인적사항,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
  - ※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상용근로소득·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연 2회 제출
-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 지원을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
  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'21.7월<sup>\*</sup> 소득분부터, 상용근로소득·기타소득<sup>\*\*</sup>은 '22.7월 소득분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
- \* '21.3.16. 소득세법 개정 완료
- \*\* 강연료,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
-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, 불분명·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
  - ※ 가산세율 : (미제출, 불분명 등) 0.25%, (지연제출) 0.125%

② 상용근로소득·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이유는?

-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(20.12.23 발표)」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정보 파악 추진
  - 특고 등에게 용역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필요
    - \* 특고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'21.7월 소득분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('21.3 소득세법 개정)
  - 상용근로자도 일용근로자·특고와 동일하게 매월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정보 간 정합성·활용도 제고

③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방안은?

-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
  - ❶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(1%)보다 낮은 0.25% 적용
  - ❷ 소규모 사업자(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)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으로('22.7월~'23.6월) 가산세 면제
  - ❸ 지급사실 불분명금액이 5%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
- 전산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소규모 사업자 홍보·안내 등 국세청 세정지원 확대

## (5-2)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

(상세본 58P)

### ① 전자(세금)계산서란?

- (개념)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되는 (세금)계산서로서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
- (기한) ①발급기한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
②전송기한: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
- (혜택)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·전송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(세금)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
- (발급건수) 전자세금계산서 1억 7,267만 건,  
전자계산서 2,229만 건 발급('19년 기준)

### ②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방법

- 국세청 홈택스, 발급대행 사업자(ASP, ERP), 전화(ARS), 세무서를 통해 발급 가능

구분	발급방법
국세청 홈택스	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<b>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)</b> 에 접속하여 발급
발급대행 사업자	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<b>발급대행 사업자(ASP)</b> 시스템 또는 민간에서 자체 구축한 <b>ERP</b> 시스템을 통해 발급
전화(ARS)	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<b>보안카드를 발급받아</b> 국번 없이 <b>자동응답전화(ARS, 126-1-2-3번)</b> 를 통해 발급

- '21.2월부터 발급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실시
  -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지문·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 가능

### 3. 과세형평 제고

#### (1)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기산세 등 신설 (상세본 61P)

#####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기산세 등 신설 취지

- 「법인세법」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중이나, 성실한 제출 이행을 담보할 제재수단 부재  
⇒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인 해당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필요

## (2)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

(상세본 62P)

### ① 「법인세법」 상 성실신고확인제 개요 및 대상

- (개요) 세무대리인\*에게 장부,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

\* 세무사, 회계사, 세무법인, 회계법인

- (대상) ①소규모 법인 및 ②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
[단,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]

#### ① 소규모 법인 요건(법인법 §60의2, ①~③ 모두 충족)\* 해당 법인

- \*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% 초과  
② 부동산임대업 또는 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% 이상  
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

####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('18.2.13. 이후) 후 3년 이내 법인

### ② 성실신고확인 미이행시 제재 및 인센티브

제재	인센티브
▶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(법인법 §75) - 산출세액의 5%	▶ 신고기한 연장(법인법 §60①) - 기존 법인세 신고기한(3개월) + 1개월
▶ 확인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 불이행시 수시조사 대상(국기법§81의6③)	▶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(조특법 §126의6) - 확인비용의 60%, 150만원 한도

### ③ 성실신고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취지

- 실질적인 사업활동 보다 부동산 임대·이자·배당 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의 경비처리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

### (3)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

(상세본 63P)

#### ① 「소득세법」 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요

- (개요)**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필요

- (대상)**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

과세기간	광업, 도소매업 <sup>1)</sup>	제조업, 숙박음식점업 <sup>2)</sup>	부동산업, 서비스업 <sup>3)</sup>
'11~'13년	30억원 이상	15억원 이상	7.5억원 이상
'14~'17년	20억원 이상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
'18년이후	15억원 이상	7.5억원 이상	5억원 이상

1) 농림어업, 광업,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

2)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가스수도업, 하수폐기물처리업, 건설업 등

3) 부동산임대업, 과학및기술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 등

- (확인내용)**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측면 탈세 모두 확인, 가공경비 ·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측면 탈세 방지 중심

- (제재)** “성실신고확인서”를 미제출시 가산세(산출세액의 5%) 부과 및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에 추가(법 81의2)

#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- (개정내용)** 사업자의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\*을 가산세로 부과

\* MAX [산출세액 × (사업소득금액 / 종합소득금액) × 5%, 수입금액 × 0.02%]

- (개정취지)**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합리화

#### (4)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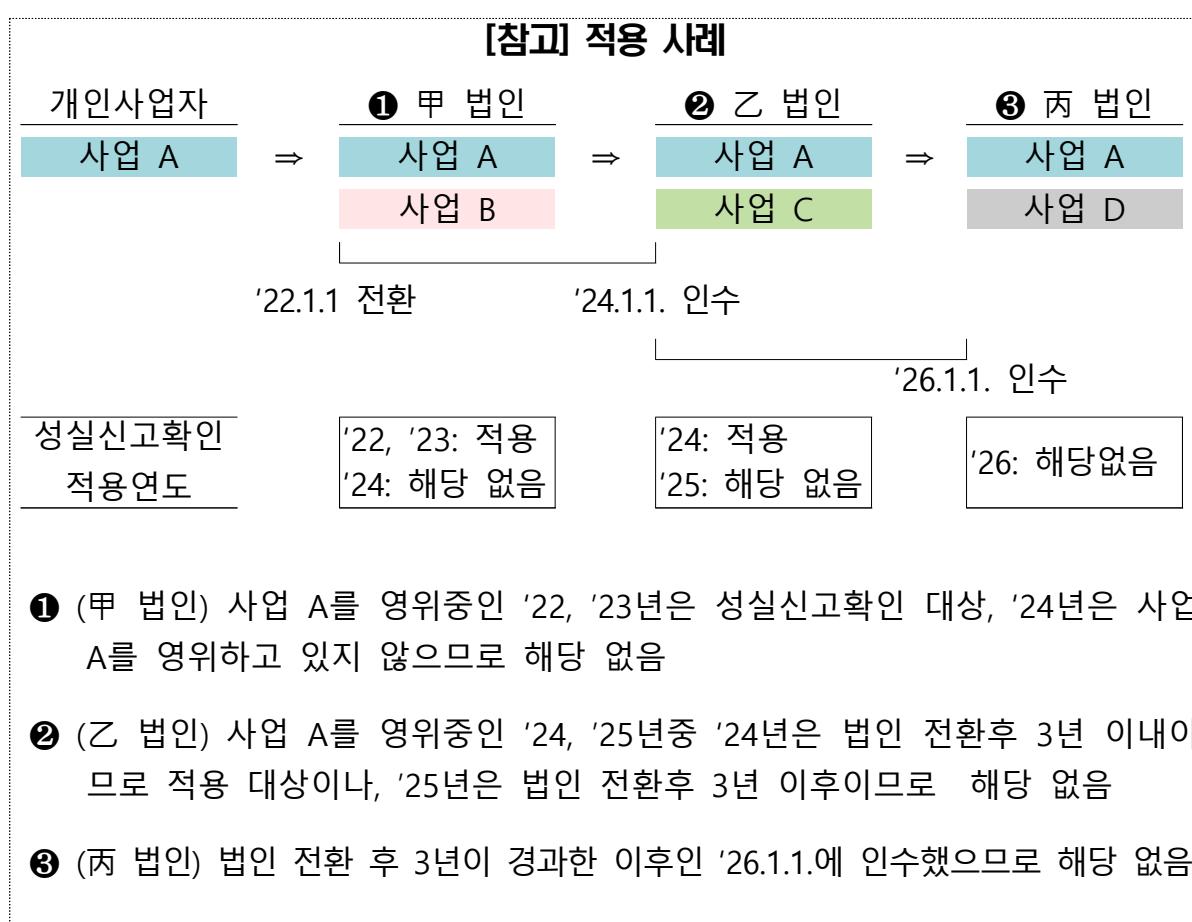
(상세본 64P)

## 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기업 등 범위 보완 취지

-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을 다시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 
1회 이상 다른 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 
회피하려는 유인 방지 취지

## ② 적용 대상 법인

-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, 해당 사업을 현물 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인수하여 영위중인 법인



## (5)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(상세본 66P)

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(개정취지) 위기지역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
  -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산업·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골프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유도
  - 최근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 결정\*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유지
- \*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·창원·고성 등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추가 연장 결정(산업부, '21.5.28)

- (개정내용)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기한 2년 연장(75% 감면, 12,000 → 3,000원)

### ②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

- 최근 제주도 골프장 업황\* 및 여타 지역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종료

\*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 수('19→'20년, 명): 2,090,361 → 2,399,511 <+14.7%>  
제주도 골프장 매출액('19→'20년, 억원): 1,957 → 2,277 <+16.4%>

※ 출처 : 제주도 홈페이지, 한국레저산업연구소

## (6)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

(상세본 66P)

### 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취지

- 사업양수는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비슷하나 사업 양수법인의 종전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

⇒ 이를 악용한 조세부담 회피<sup>\*</sup>를 방지할 필요

\* 예 :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큰 소득이 발생하는 우량법인을 양수하여 종전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우량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

### ② 개정내용 적용대상

-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양수가 아닌 일부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<sup>\*</sup>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

\* ①특수관계자간 이뤄진 사업 양수로서 ②자산의 70% 이상 & 순자산의 90% 이상을 양수한 경우

## 1. 과세기반 정비

### (1)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

#### (1-1)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·제출의무

(상세본 69P)

##### 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제도

- (개요)**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오픈마켓(구글, 아마존 등)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이 국내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('15.7월~)
- **(전자적 용역)**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등으로 공급하는 게임, 음악, 동영상, 소프트웨어 등
- **(납세의무자)** 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

거래 형태		납세의무자
직접 공급	▼ 국외사업자 ↔ 소비자	국외사업자
제3자 공급	▼ 국외사업자 ↔ 오픈마켓 ↔ 소비자	오픈마켓

- **(신고 · 납부)**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(홈택스)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
  - 매분기 부가가치세 예정·확정 신고·납부

## ② 개정 내용 및 효과

- (개정내용)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
  -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함
  -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간편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
- (기대효과) 간편사업자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내용 검증 등 국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

## (1-2) 특정외국법인(CFC)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

(상세본 71P)

###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란?

- (개요) 내국인과 특수관계(50% 이상 소유 등)인 특정외국법인\*에 이자·배당 등 수동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국내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보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

\* CFC(Controlled Foreign Company) 거주자·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인 해외투자법인

- (적용요건)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

- (세부담률)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% 이하

- (지배요건) 내국인과 특수관계\*가 있는 외국법인

\*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 보유 등

- (사업활동) 특정외국법인의 고정된 시설 및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거나, 수동적 업종(부동산임대업 등) 및 수동소득(이자·배당·사용료 등) 창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

- (과세방법)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산입

◆ 배당간주금액 =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

×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

-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(의금불산입)

②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법인세 최고세율의 70%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유는?

① (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) 현재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단기준은 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5%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,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
-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속 상승<sup>\*</sup>해 왔으나,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'96년 제도시행 이래 변동 없이 유지

\* 상출기업 실효세율(%) : ('10) 17.6 ('15) 19.2 ('17) 19.9 ('19) 23.2

해외 주요국의 세부담률 판정기준

국가	한국	독일	일본	미국	스페인	영국
세부담률	15% 실효세율	25% 실효세율	20% 실효세율	법인세 최고세율의 90%	법인세 최고세율의 75%	자국납부 기정세액의 75%
법인세 최고세율 (지방세 포함)	27.5%	29.9%	29.7%	25.8%	25.0%	19.0%

② (국내 법인세율과 연동) 법인세율이 변동되더라도 판정기준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명목 세율과 연계

-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고정 세율방식이 아닌 모국 세율과 비교<sup>\*</sup>하는 방식을 채택 중

\* OECD 국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황: (모국 세율과 비교) 미국, 영국 등 19개국, (고정세율) 한국, 독일 등 9개국, (특정국가 열거) 3개국, (기준 없음) 5개국

-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해외 사례(최고 90%, 미국), 현행 기준(15%)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의 70% 수준으로 결정

### ③ 국내 모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?

- 과세대상을 수동소득을 유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없음
  -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이자·배당 등 수동소득을 수취하는 일부 해외투자법인의 경우 국내 모회사로 배당할 유인이 증가
  -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(익금 불산입)하므로, 국내 모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움

### (1-3)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

(상세본 72P)

#### 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개요

-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·처분·운용 내역 파악을 통한 역외세원 관리 강화
  - (신고대상) 해당 과세연도 중 취득·투자운용(임대)·처분한 (물건별 취득·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한정) 해외 부동산
  - (신고기간)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
  - (제재)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(거짓 제출)시 취득·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% 과태료 부과(1억원 한도)
    - 자료 미제출(거짓 제출)자에게 세무서장은 90일 이내에 위반금액 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 가능(미소명 금액의 20% 과태료 부과)

#### ②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이유는?

-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 명세서 제출 의무화('14년)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의 경우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,
  - 투자운용(임대)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
  - 납세자의 순응기간을 감안하여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
  - 매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\* 및 신고 안내를 강화
- \* (예)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 → 변동사항 없는 경우 동일 내용을 간편하게 제출

## (2)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

### (2-1)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

(상세본 74P)

① 최근 국세청 등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, 추가로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?

- (현행 징수방식)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\*를 채권으로 보아,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'채권 압류' 규정을 통해 압류하고 있음

\* 가상자산 반환, 매각청구권 등

- (한계점)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\* 등에 보관되어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

\* (지갑)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,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고유 주소 및 암호키가 생성되며, 여기에 가상자산의 소유권·거래내역 등이 저장

-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, 일선 현장에서 압류·체납 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

\* (주요 사례) 체납자가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,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에 불복

- (개정 내용)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,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

⇒ 이를 통해 고액·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,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 지원

## (2-2) 가공·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

(상세본 75P)

### ① 현행 명단공개 제도

- 현재 ①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, ②조세포탈범, ③해외계좌신고 의무 위반자 및 ④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공개
  - 명단공개 대상도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<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·요건 >

근거법	명단공개 대상	명단공개 요건
국세 기본법	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	①2년간 1천만원 이상 추징, ②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·보관의무 불이행, ③3년간 거짓영수증 5회 or 5천만원 이상 발급, ④공익법인이 연 2회 이상 법인세법상 의무불이행
	조세포탈범	면세유 부정유통, 가짜석유 제조·판매 또는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
	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	해외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국세 징수법	고액·상습체납자	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

### ②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?

- 고액 자료상의 명단을 공개하여 (세금)계산서 수수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
  - 조세제도의 근간 중에 하나인 (세금)계산서 제도를 악용하는 자료상 등 (세금)계산서 수수질서 위반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명단을 공개할 필요
  - 또한, 고액 자료상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가 자료상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

※ 개정안 명단공개 대상인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§8의2) 위반내용

- 실제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·수취하거나 작성·제출한 (세금)계산서 또는 (세금)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자(중개·알선자도 포함)

## (2-3)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·검사 대상 확대

(상세본 76P)

### ① 질문·검사권 제도 개요

-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자 압류 재산의 소재나 수량 파악을 위해 필요 시 체납자 및 관련자에게 질문 또는 장부·서류·그 밖의 물건의 검사 가능

<질문·검사 대상자(국세징수법 §36)>

1. 체납자
2.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
3.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
4. 체납자와 채권·채무 관계가 있는 자
5.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
6.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
7. 체납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
8. 체납자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는 자

### ② 질문·검사 대상자 확대 범위 및 그 이유

- (확대 범위) 질문·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'거주정보'를 보유한 자 추가
- (필요성) 체납자의 거주 정보는 그의 재산을 찾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,
- 고액·상습 체납자가 본인 명의 뿐 아니라 제3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보완
- ⇒ 법 개정으로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가장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(예시) 등에 대한 질문·검사가 가능함을 명확화

## (2-4)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

(상세본 77P)

### 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?

- 명의위장 근절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
- 명의위장 사업자는 명의 대여자와 실사업자 간의 은밀한 통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명의위장 제보의 유인을 강화
  - \* ('19년 국감 김두관) 명의위장 사업자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
  - \* 일반 탈세제보 포상금은 '08년 이후 약 4배 증가하였으나, 명의위장 포상금은 '08년 제도 도입 이후 변동이 없는 점도 감안
  - \* '19년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총 20건 2,000만원 지급
  - \* 일반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별 신고포상금

탈루세액	1억원	5억원	10억원	20억원	
포상금	'08년	5백만원	2천 5백만원	5천만원	8천만원
	'21년	2천만원	1억원	1억 7,500만원	3억 2,500만원

## 2.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

### (1)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

(상세본 78P)

#### 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?

-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13년, 관세는 11년 동안 유지<sup>\*</sup>되어 변화된 물가·소득수준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

\* 금액조정 연혁: 국세 ('75) 30만원 → ('84) 50만원 → ('08) 100만원 → 현재  
관세 ('84) 50만원 → ('10) 100만원 → 현재

- '08년 대비 '20년 소비자물가는 22%\*, 1인당 국민총소득(명목)은 60%\*\*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50% 상향조정함

\* 소비자물가지수('15년=100, 통계청): ('08년) 86.08 → ('20년) 105.42 (22%↑)

\*\*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(만원, 통계청): ('08년) 2,232.6 → ('20년) 3,762.1 (60%↑)

#### ② 구체적인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수준은?

- 현재 연 7~8% 수준<sup>\*</sup>에서 검토 중이며, 구체적인 세율은 시행령 개정할 때의 시중은행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

\* (현행 납부지연가산세율) 1일 0.025% (연간 환산 9.125%)

\*\*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과 다른 채무보다 국세를 우선 납부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

-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(현재 6~8% 수준)를 중심으로 시중금리 추이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

## (2)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

### (2-1)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

(상세본 79P)

- ①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6개월 → 1년으로 확대하는 이유

- (현황)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
  - 다만,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
- (개정)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차이를 1년까지 인정
  -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(공급시기 착오),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(지연 발급)될 수 있으며,
    - 특히 실무상 전년도 1년치 결산조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

#### < 적용사례 >

- ◇ (사례1 : 공급시기 착오) '21.2.25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'21.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실제 공급시기가 '20.6.25일 이었음이 밝혀진 경우
  - (현행) 6개월 이상 착오(발급기한 : '21.1.25일)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
  - (개정) 1년 이내 착오(발급기한 : '21.7.25일)이므로 과세당국의 경정을 통해 공제 가능
- ◇ (사례2 : 지연발급) 공급시기가 '20.6.25일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, '20년 결산조정과정에서 누락을 발견하고 '21.2.25일 세금계산서 발급
  - (현행) 6개월 이상 지연발급(발급기한 : '21.1.25일)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
  - (개정) 1년 이내 지연발급(발급기한 : '21.7.25일)이므로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

- (기대효과) 공급시기 착오, 지연발급 등의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
### (3) 납세 편의 제고 등

#### (3-1) 탁주·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

(상세본 86P)

#####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**(배경)** 주류가격 인상 시 종가세 하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, 종량세 하에서는 세부담 불변
  - '19년 주세개편 시 맥주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물가상승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
    - \* 매해 적용세율 = 직전연도 말 세율  $\times (1 + \text{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})$
- **(개정내용)** 물가연동 세율 적용시기를 1분기 주세 신고기간과 일치(현행 : 당해 3.1. ~ 다음해 2월 말 → 변경 : 당해 4.1.~다음해 3.31.)
- **(개정취지)**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(매분기말)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 편의 제고
  - 세율적용시점과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이 달라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산정하기 불편한 문제를 해소

### (3-2)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

(상세본 87P)

#### ① 개정 배경

-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을 구입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(수출)하는 경우,
  -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①보세구역 반입 또는 ②세관장 확인 후 반품(수출)을 해야 관세 환급 가능
-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200만원 이하<sup>\*</sup>의 해외직구물품도 반품(수출) 전에 세관장 확인 등이 있어야 환급 가능
  - \*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근거
  - 일반 소비자의 경우, 세관장 사전 확인 등의 환급 요건을 잘 몰라 불편이 발생

#### ②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

- (개정 이유)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직구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사전 확인을 사후 확인으로 전환하여 해외 직구 이용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
- (개정 내용)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(수출)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관세를 환급
  -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 및 환불 영수증, 해외운송장 등을 제출(시행령 규정사항)

### (3-3)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

(상세본 88P)

#### ① 개정 이유

- (현황)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여 관세 환급('21.1. 시행)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
    - 동 물품을 ①시내 면세점, ②입·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로 한정
  - (개정 이유) 기내·선상 구매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 편의 및 일반 면세점 이용과의 형평성 제고
- \*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 및 환불 영수증 등을 제출(시행령 규정사항)

#### ② '22.4월부터 시행(3개월 유예)하는 이유

- (시행시기) '22.4.1.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
    - 관련 업계 안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·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을 3개월 유예
- \* 보세판매장(면세점) 환급제도가 도입된 경우에도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음('19.12. 도입, '21.1. 시행)

### (3-4) 원양어선용 선박·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

(상세본 89P)

#### ① 개정 이유

- (현황) '국제무역선'에 공급하는 '선박용품\*'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·소비가 가능(관세법 §143)하나,

\* (선박용품) 음료, 식품, 연료, 소모품 및 수리부품 등

- '원양어선'에 공급하는 '선박·어로용품\*'은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후에 선박에 적재 가능(납부 관세는 추후 환급\*\*)

\* (어로용품) 어구(漁具), 조상기(그물 감는 장비) 및 오타보드(그물 전개장비) 등

\*\* 「수출용 원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환급대상임  
(<sup>①</sup>보세창고 반입→<sup>②</sup>수입통관→<sup>③</sup>해수부 추천→<sup>④</sup>수출통관→<sup>⑤</sup>적재 및 환급신청)

- (개정 필요성)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·어로용품도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에 준하여 간소한 절차(세관장의 적재 허가)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

#### ②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

- '원양어선'을 적재허가 대상선박에 추가하고, 동 어선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물품(선박·어로용품)도 적재허가 대상물품에 추가하여 통관절차 간소화(수출입통관 불필요) 및 업계부담 완화

⇒ 절차상 '사후 환급'을 '사전 면세'로 전환하는 효과

※ 다만, 해수부 장관(또는 위임받은 자)의 확인을 받은 선박·어로용품에 한함

### (3-5)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

(상세본 90P)

#### ① 개정 이유

- (현황) 관세를 제외한 국세나 지방세 분야에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미 운영 중
  - (국세청)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\*
    - \* 법인납세자, 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(지자체)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,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원\*
    - \* 법인납세자,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(개정 필요성)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

#### ②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

-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,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은 재결청(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)에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
  - (신청인 요건)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과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일 것, 고액·상습 체납자 등은 제외
  - (대상 사건\*)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
    - \* 소득금액, 청구세액 등 구체적인 신청대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
  - (국선대리인 자격) 변호사, 관세사

### 3. 조세제도 합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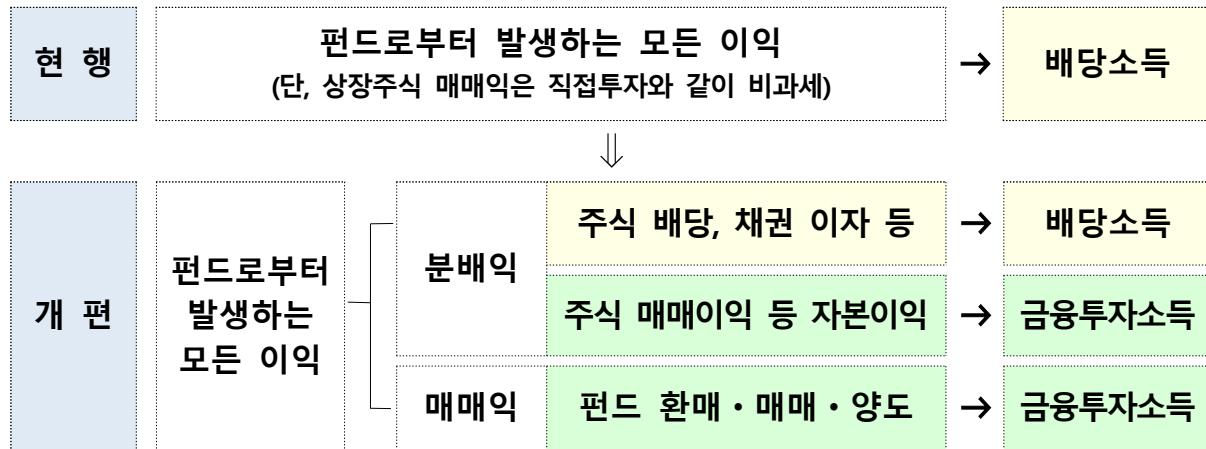
#### (1)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

(상세본 91P)

##### ① 개정 배경

- 금융투자소득 도입(‘23.1.1~)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,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를 재설계할 필요

<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체계 개편 >



#####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

- 현행 특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 체계로 개편

현행(~'22)	개정('23~)	
배당소득 비과세	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비과세	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
배당소득 9% 분리과세	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9% 분리과세	
배당소득 14% 분리과세	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4% 분리과세	

- 다만, 비과세 · 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택 허용(확정신고 시)

### ③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화

- 대부분의 투자자는 9%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행 제도와 세부담 동일
- 다만, 투자자에 따라 9% 분리과세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손익통산, 기본공제\*, 이월결손금 적용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적은 경우 선택 허용
- 분리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

#### < 개정에 따른 세부담 예시 >

	금융투자소득 사례 ①		금융투자소득 사례 ②	
세액계산	일반소득 50만원	특례소득 200만원	일반소득 300만원	특례소득 200만원
분리과세	$(50-50) \times 20\% = 0\text{만원}$	$200 \times 9\% = 18\text{만원}$	$(300-250) \times 20\% = 10\text{만원}$	$200 \times 9\% = 18\text{만원}$
합산과세	$(250-250) \times 20\% = 0\text{만원}$		$(500-250) \times 20\% = 50\text{만원}$	
총 세액	0만원 (합산과세 선택)		28만원 (분리과세 선택)	

\* 국내주식형 펀드가 아닌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정(250만원 기본공제 적용)

## (2)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

(상세본 95P)

### ① 관세율표 개요

-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로서 총 6,896개의 세목(稅目)을 운용 중
  -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(WCO)가 국제무역 증진을 위해 제정한 협약(HS 협약)\*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
  - \*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HS Convention)」으로서 WCO(세계관세기구, 한국 68년 가입) 183개 가입국 중 '21.5. 현재 160개국 참여
  - 현행 관세율표상 세목(현행 6,896개)은 HS 협약 품목분류 코드인 HS 6단위(5,387개)를 기본으로 하되, 일부 품목에 대해 세분

### ②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\*

\* (현행) 세목 6,896개 → (개정안) 6,979개

- WCO가 최근 개정한 품목분류표(HS2022)를 우리나라 관세율표에 반영
  - \*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며, 금번 개정안(HS2022)을 '22.1.1.부터 발효
  - 식품자원·기후변화·전략물자·신상품 분야에서 신설 품목을 반영(세목 +452개)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·통합( $\triangle$ 227개)
- HS 2022 개정과는 별개로, 국제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간소화 ( $\triangle$ 142개)
  - 면역물품(34→21개), 인증표준물질(27→10개), 영화필름(20→2개),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(118→24개)

### (3)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

(상세본 96P)

####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미확인시 최고 세율 적용하려는 이유는?

-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별로 세율이 상이하므로,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공급자를 확인해야만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
  -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수입함에도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적용 세율이 명확하지 않아 세액결정에 애로
  - 이를 악용하여 고세율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시도 발생 가능성
  - ☞ 금번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 공급자 확인이라는 납세협력 이행을 적극 유도

#### 【참고】 덤핑방지관세 개요

-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
  -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물품의 공급자(생산자)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여 부과

예 :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 관세율(%)
중국	1. 광동지야준(Guangdong Jiajun Ceramics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12.40
	12. 허메이(Foshan Hemei Ceramics Co., Ltd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9.41 (최고세율)
	22. 그 밖의 공급자	16.07

#### ② 공급자 입증 방법은?

- 세관에서 공급자(생산자) 확인시에는 공급자를 특정화할 수 있는 입증서류\*, 현품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

\* (예) 생산자증명서, 원산지증명서,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, 중국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 등

## (1)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

(상세본 162P)

## ① 현행제도

- (제도취지) 거주자·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<sup>\*</sup>을 통해 해외 금융 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해외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

\*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)」상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,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,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과세신탁 ②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신탁, 투자합자조합, 투자익명조합

- (이중과세 제거방법)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,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소득을 투자자에 실제 배분시 국내세율(14%)로 원천징수

## ② 개정 이유 및 내용 (이중과세 제거방법 개선)

- (개정 이유) 현행 2단계 절차(先환급→後원천징수)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, 절차 간소화, 납세편의 제고

- (이중과세제거방법)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 소득 지급시 국내 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

- 간접투자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<sup>\*</sup>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⇒ 투자자가 공제 가능

\* (원천징수하는 소득) 간접투자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소득, 투자신탁이 법인투자자에 지급하는 이익(배당)

- (시행시기) '23년 금융투자소득 세제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기 고려, 금융투자소득에 맞추어 시행('23.1.1일 이후)

## (2)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182P)

### ① 일몰연장 취지

- (개정취지)** 교통시설·환경개선·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(목적세) 확보

\* 특별회계별 재원배분 : (교통시설) 73% (환경개선) 25% (균형발전) 2%

- (개정내용)**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일몰 적용기한을 3년 연장 ('21.12.31. → '24.12.31.)

### 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배분 확대 등 개편 필요
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배분\* 조정에 대한 요구 증가

\* 특별회계별 재원배분 : (교통시설) 73% (환경개선) 25% (균형발전) 2%

-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통 SOC 시설 확대, 균형 발전 등 다른 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재원의 배분조정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

#### < 참고 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>

	'94년~'06년	'07년~'13년	'14년~'19년	'20년~
교통시설특별회계	100%	80%	80%	73%
환경개선톤별회계	-	15%	15%	25%
에너지자원특별회계	-	3%	-	-
균형발전특별회계	-	2%	2%	2%

### (3)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

(상세본 186P)

#### ① 쇼핑몰형 등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명확화

□ '쇼핑몰형' 유형도 해외직구 구매대행 형태에 포함됨을 명확화

- ① (위임형) 국내 소비자(화주)가 구매물품을 특정하여 요청함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물품의 구매를 대행
- ② (쇼핑몰형)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, 국내 소비자(화주)의 요청에 따라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

#### ② (참고) 그간 구매대행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

□ (제도개선 사항)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\*의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

\* 소비자(화주)로부터 물품가격·운송비·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·부가세 등이 포함된 구매비용을 선취하고,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

- ① (연대납세의무) 관세 등을 선납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, 구매대행업자와 화주가 연대납세의무 부담(관세법 §19⑤1호다목, '20.4.1. 시행)
  - (관세포탈죄)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(또는 관세율 등)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(법 §270①)
- ② (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) 구매대행업자 중 「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」에 따라 '통신판매업자'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(법 §222①7호, '21.7.1. 시행)

#### (4)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

(상세본 199P)

##### ① 개정 배경

- 현행 규정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①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②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받는 경우에 동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결로 보아 가산세 면제 혜택<sup>\*</sup>을 부여

\*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오류 통보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

- 그러나 원산지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아닌 원산지 심사를 수행하는 5개의 본부세관<sup>\*</sup>장이 다수
  - \* 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
- 이에 따라, 대부분의 납세자가 오류를 통보받고도 법 제36조 제2항<sup>\*</sup>에 따른 가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

##### ② 개정 내용

-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 범위를 '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'으로 확대